

의안번호	제545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옥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4월 11일

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1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노금식, 김성대,  
오영탁, 이태훈, 임영은,  
최정훈

### 1. 개정이유

-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, 행위제한, 주차료, 사무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
-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치·운영 대상,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휴관일 조정(안 제3조제1항1호)
  -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
-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(안 제4조제2항·제3항, 별표 1)
  - (면제)
    -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
    -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

- (할 인)
  - 단체관람객
  -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(1,000→2,000원)
  -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(2,000원)
- (삭 제) 의무경찰·의무소방원(별표 1)
  - 현행법에 근거한 금지사항 정비(안 제5조제2항)
  - 시설 설치·운영 대상 확대(안 제7조제1항)
  -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체화(안 제10조제1항)
  - 시설 명칭 및 시설 사용료 변경, 신청서식 변경(안 별표 3, 별지 서식)
  - 청남대 주차료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4조, 별표 2)
  - 교육프로그램 관련 잘못된 인용 조항 수정 및 교육비 반환 기준 구체화(안 제15조제1항, 별표 4)
  - 청남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표업무 위탁범위 확대(안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월요일”을 “월요일,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, 제5호,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장해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
11.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

12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

다. 다만,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하며 2개 이상 중복 시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한다.

1. 20인 이상 단체관광객: 별표 1의 단체입장료 적용
  2. 충청권 4개 시·도(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: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  3. 소장과 사전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: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
  4.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,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영수증(1인 1만원 이상) 또는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: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
  5.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: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
- 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취사행위”를 “취식행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강의실”을 “회의실, 강의실”로 한다.

9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농·특산물 등 홍보·판매·운영시설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, 인력배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7조로 한다.

제15조제1항(중전의 제16조제1항)에서 “제12조”를 “제14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6호(중전의 제17조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6. 매표 및 주차 관리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,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입 장 료 (제4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개 인	단 체 및 야간개장 (17:30이후)	비 고
어 른	6,000	5,000	19세 ~ 64세
청 소 년	4,000	3,000	13세 ~ 18세
어 린 이	3,000	2,000	7세 ~ 12세
노 인	3,000	2,000	65세 이상
군 인 등	4,000	3,000	•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 • 사회복지무요원

[별표 2]

##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(제10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		· 과오납한 시설 사용료 전액
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		·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
신청자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시설사용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	시설사용 예정일 3일이상 이전	·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해당액
	시설사용 예정일 2일 이전	·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90퍼센트 해당액
	시설사용 예정일 1일 이전	·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80퍼센트 해당액
	시설사용 예정일	· 납부한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

[별표 3]

## 청남대 시설 사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장 소	시설명 및 사용 구분	사용료	비 고
청남대 내	내·외부 촬영	500,000/5시간	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등 촬영 · 1시간 초과시 100,000원 추가
	야외 결혼	500,000/일	· 하객 입장료 별도
본관	제2영빈관	200,000/4시간	· 1시간 초과시 20,000원 추가
대통령기념관 (별관)	기획전시실	100,000/일	
	세미나실	100,000/4시간	
	회 의 실	80,000/4시간	· 1시간 초과시 20,000원 추가
	강 당	150,000/4시간	
대통령기념관	제1영빈관	700,000/일	
	국무회의실	200,000/4시간	· 1시간 초과시 20,000원 추가
임시정부기념관	회 의 실	200,000/4시간	· 1시간 초과시 20,000원 추가
	세미나실	150,000/4시간	

- ※ 야간 사용료는 50% 할증(18~21시)
- ※ 야외결혼의 경우 비수기(12~3월, 7~9월) 및 14시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50% 할인
- ※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그 밖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.
- ※ 각 시설 사용별 세탁비는 별도 부과
- ※ 냉·난방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- ※ 주중 시설사용 신청에 한해서 20% 할인

[별표 4] <신설 2023.5.12.>

## 교육비 반환기준 (제16조제4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		· 과오납한 교육비 전액
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		· 납부한 교육비 전액
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	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7일 전까지	· 납부한 교육비 전액
	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	· 납부한 교육비의 70퍼센트 해당액
	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	· 납부한 교육비의 50퍼센트 해당액
	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당일 까지	· 반환하지 않음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개관 및 관람시간)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.</p> <p>1. 1월 1일, 설날, 추석 및 <u>매주 월요일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6세 이하의 영·유아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5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<u>국가유공자</u></p>	<p>제3조(개관 및 관람시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월요일,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입장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86조에 따른 <u>국가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상이1~3급자와</u></p>

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 민주유공자

7. ~ 10. (생략)

11.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

<신설>

12.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 다만,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.

<신설>

1. 충청권 4개 시·도(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: 단체입장료를 적용

동행하는 보조인 1인
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, 선순위 유족, 장해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

12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
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아니하며 2개 이상 중복 시 더 큰 금액으로 할인한다.

1. 20인 이상 단체관람객: 별표 1의 단체입장료 적용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
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  
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 
사업체,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 
행사 등에 참석하고 행사기간  
종료 후 3일 이내 입장하는 경  
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1  
천원을 할인

3.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,  
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  
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  
우: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  
천원을 할인

3의2. (생략)

<신설>

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 
(생략)

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 
는 아니 된다.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개인입장요금  
에서 2천원-----  
--

4. -----  
-----  
----- 영수증(1인 1만원 이상)  
또는 할인권-----  
----- 개인입장요금-----  
-----

4의2. (현행 제3호의2와 같음)

5.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:  
별표 1의 개인입장요금에서 2  
천원을 할인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사행위

2. ~ 4. (생략)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충청북도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9. 교육시설(강의실, 체험실, 생활관,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)

10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한다.

1. ----- 취식행위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농·특산물 등 홍보·판매·운영시설

10. -----회의실, 강의실-----  
-----  
-----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 2 경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
1.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 10%를 공제한 잔액

2.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

② (생략)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주차료 징수)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
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

3.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의무실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실 운영, 인력배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제>

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차량

4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
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

6.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증 소지자에 한함)이 운전하는 차량

7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)이 운전하는 차량

8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

9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

10.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

11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15조(교육프로그램의 운영) ① 도지사는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,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6조(교육비 납부·감면 등)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4조(교육프로그램의 운영)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교육비 납부·감면 등)

① 제14조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무의 위탁)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주차장 운영 관리

7.·8. (생략)

제18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사용료, 납부시기,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.

제16조(사무의 위탁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매표 및 주차 관리

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17 (상표 등의 사용) (현행과 같음)

#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청남대 운영에 관하여 휴관일, 입장시간, 행위제한, 주차료, 사무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
- 청남대 컨벤션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설치·운영 대상,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
  -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
  -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
-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
  - 20인 이상 단체관람객
  -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(1,000→2,000원)
  -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(2,000원)
- 청남대 시설 사용료 변경
- 주차료 폐지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입장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.
  - 2.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
  - 11. 충청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
- 안 제4조(입장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
  - 1. 20인 이상 단체관람객
  - 3.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(1,000→2,000원)

## 5.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(2,000원)

- 안 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청남대 주차료 폐지로 제14조(주차료 징수) 삭제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~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.
-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.

### 나. 추계 결과

#### ○ 산출과정

##### -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

##### ① 7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1인

: 월평균 100명 가정(동반포함)×12개월×6,000원 = △7,200천원

##### ②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

: 166명(현재 아너소사이어티 수(83명) 연 2회 방문 가정)×6,000원 = △996천원

'24년(①+②)\*9개월/12개월 = △6,147천원

'25년(①+②) = △8,196천원

'26년(①+②) = △8,196천원

'27년(①+②) = △8,196천원

'28년(①+②) = △8,196천원

##### -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

##### ① 20인 이상 단체관람객

: 128,152명('23년 단체입장객수 가정)×1,000원 = △128.152천원

##### ② 관광협약체결 기관 단체 및 사업체

: 25,276명('23년 협약단체 입장객수 가정)×1,000원 = △25,276천원

##### ③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

: 5,452명('23년 시설사용 유료입장객수 가정)×2,000원 = △10,904천원

'24년(①+②+③)\*9개월/12개월 = △123,249천원

'25년(①+②+③) = △164,332천원

'26년(①+②+③) = △164,332천원

'27년(①+②+③) = △164,332천원

'28년(①+②+③) = △164,332천원

- 청남대 시설 사용 대상 추가 및 비용 인상

① 본관 제2영빈관(200,000원 / 4시간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200,000원 = 5,000천원

② 대통령기념관(별관) 기획전시실(50,000원 인상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50,000원 = 1,250천원

③ 대통령기념관(별관) 세미나실(70,000원 인상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70,000원 = 1,750천원

④ 대통령기념관(별관) 회의실(60,000원 인상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60,000원 = 1,500천원

⑤ 대통령기념관(별관) 강당(100,000원 인상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100,000원 = 2,500천원

⑥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(200,000원 인상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200,000원 = 5,000천원

⑦ 대통령기념관 국무회의실(200,000원 / 4시간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200,000원 = 5,000천원

⑧ 임시정부기념관 회의실(200,000원 / 4시간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200,000원 = 5,000천원

⑨ 임시정부기념관 세미나실(150,000원 / 4시간)

: 25회('23년 각 대관시설별 연평균 사용횟수 가정)×150,000원 = 3,750천원

'24년(①+②+③+④+⑤+⑥+⑦+⑧+⑨)\*9개월/12개월 = 23,062천원

'25년(①+②+③+④+⑤+⑥+⑦+⑧+⑨) = 30,750천원

'26년(①+②+③+④+⑤+⑥+⑦+⑧+⑨) = 30,750천원

'27년(①+②+③+④+⑤+⑥+⑦+⑧+⑨) = 30,750천원

'28년(①+②+③+④+⑤+⑥+⑦+⑧+⑨) = 30,750천원

- 주차료 폐지

: 월평균 14,500대 가정 ×12개월×1,500원 = △261,000천원

'24년 261,000천원\*9개월/12개월 = △195,750천원

'25년 = △261,000천원

'26년 = △261,000천원

'27년 = △261,000천원

'28년 = △261,000천원

○ 산출결과 : 연평균 402,778천원,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,913,196천원  
세입 감소

다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없음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 종 기

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△302,084	△402,778	△402,778	△402,778	△402,778	△1,913,196
입장료	△129,396	△172,528	△172,528	△172,528	△172,528	△819,508
주차료	△195,750	△261,000	△261,000	△261,000	△261,000	△1,239,750
시설사용료	23,062	30,750	30,750	30,750	30,750	146,062
세 출	-	-	-	-	-	-
재원 조달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-	-	-	-	-
	지방세	-	-	-	-	-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